
2025년 행정사 2차 시험대비 파이널 특강

행정절차론

- 박이준 교수 -

※ 註: 각 주제의 BOX에 기재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아래의 본문은 예시 문제의 해답이 아닙니다. 실전에서는 주어진 문제의 출제 의도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1> 불이익처분의 절차적 요건

甲은 최근 드론 촬영 사업을 위해 관할 행정청에 드론 비행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甲은 공항 반경 3km 이내 비행 금지라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드론을 운행하다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 운행금지처분을 내렸다. 관할 행정청이 甲에게 발한 드론 운행금지처분이 적법하게 효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논하시오.

1. 처분의 사전통지

(1) 사전통지 대상 처분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2) 사전통지 사항

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 의견제출기한,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사전통지의 예외 (생략사유)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③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학설 : ① 거부처분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상의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는 긍정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의 경우 신청에 따라 아직 권익이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부정설(다수설)
- 판례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사전통지대상인 아니라는 입장

2. 의견제출

(1) 의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2) 의견제출의 예외

위에서 본 사전통지의 예외사유 및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

(3) 의견제출 방법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음

(4)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3.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 원칙과 예외)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①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 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함

4. 이유제시

(1) 이유제시 내용

행정청은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2) 이유제시 생략 사유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청은 ②와 ③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3) 이유제시의 방법과 정도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에서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따라서 위반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함.

다만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음

(4) 이유제시의 하자과 그 효과

이유제시의 하자는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됨. 따라서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는 처분은 위법

5. 기타

(1) 불복제기 방법의 고지

(2) 적법한 송달

<2> 하자의 치유

甲은 2025. 3. 10. 서울 강남구청장 乙에게 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려고 금지행위 해제 신청을 했다. 乙은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2025. 3. 20. 거부처분을 했다. 甲은 2025. 3. 30.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乙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2025. 4. 15. 거쳤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 하자치유의 의의

행정행위가 발령 당시에 적법요건을 완전히 구비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후에 흠결을 보완하게 되면, 발령 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효과를 다룰 수 없도록 유지하는 것

2. 하자의 치유 가능성

-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절차적 경제성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
- 판례 :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

3. 하자치유의 한계

(1)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를 치유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 치유를 인정하기 곤란

(2) 실체적 한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함

(3) 시간적 한계

- 학설 : ① 행정쟁송제기 이전에만 가능하다는 견해, ② 행정쟁송제기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견해, ③ 행정쟁송제기 이후에는 상대방에 권리구제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절충적 견해
- 판례 : 행정쟁송의 제기 이전에 가능

<3> 신뢰보호의 원칙

甲은 2025. 4. 24. Y시의 시장 乙에게 Y시에 소재한 자신의 임야에 상업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Y시 담당 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甲에게 “법적으로 가능하면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겠다.”라고 구두로 말했다. 이를 신뢰한 甲은 자신의 신청에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반조성 설계 등 실질적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乙은 2025. 5. 9. 甲에게 “甲이 신청한 임야는 국토교통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자연형 생태보전지구 확대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Y시에서는 체계적인 환경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 5.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현재 신규 개발행위허가는 불가능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甲은 담당 과장의 “법적으로 가능하면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겠다.”라는 발언을 근거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중심으로 검토하시오.

1. 의의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됨

2. 적용요건 (판례)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3. 신뢰보호의 한계

신뢰보호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적법상태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상대방의 신뢰이익간에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4>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의 지위승계

甲법인은 2025. 7. 24. Z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인 丙법인을 설립하였다. 甲법인은 합병 전, 특정 건설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丙법인은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 한다. 이와 더불어, 甲법인은 합병 전에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해당 인허가 처분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지위 승계의 유형을 설명하시오.
- (2) 위 사례에서 丙법인은 甲법인의 인허가 처분 관련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근거와 함께 검토하시오.

1. 의의

행정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가 사망하거나 당사자등인 법인이 합병되는 등 당사자등의 지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 지위를 승계시킬 필요가 있음

2. 지위승계의 유형

(1)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함. 이 경우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2) 당사자등인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

당사자등인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함. 이 경우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3) 지위승계의 승인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

이 경우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문서로 지위승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5> 「행정절차법」상 송달

행정청은 2025. 4. 24. 甲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를 송달하려 하였다. 그러나 甲의 주소지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행정청의 담당 공무원은 2025. 5. 2. 甲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甲을 만나지 못하였다. 대신 甲의 직원 乙이 있었으나, 乙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문서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수령거부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기재하고 해당 문서를 사무실 책상 위에 두고 갔다.

이후 행정청은 2025. 6. 10. 전자우편을 통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甲이 사전에 전자우편주소를 지정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어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행정청은 2025. 6. 20.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2025. 5. 2. 이루어진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를 설명하시오.
- (2) 전자우편 송달이 실패한 사유와 그 법적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 (3) 공고에 의한 송달의 효력 발생일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계산하시오

1. 의의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상의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행하는 통지행위

2. 송달의 방법

(1) 개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함.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음

(2) 우편송달

우편의 송달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3) 교부송달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음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함.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함

(5) 공고에 의한 송달(공시송달)

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

3. 송달의 효력발생

(1) 원칙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2) 우편송달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봄

(4) 공고에 의한 송달(공시송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6>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의 절차

甲은 2024. 4. 25. 자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행정청에 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甲은 먼저 인터넷으로 행정청이 공시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처리기간 등을 확인하였다. 甲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첨부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행정청은 甲에게 2024. 5. 5.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甲은 바쁜 사정으로 2024. 5. 10.까지도 보완을 하지 못하였다. 행정청은 2024. 5. 12.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서를 되돌려 보냈다. 이후 甲은 2025. 7. 15. 동일한 신청을 다시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접수된 신청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의무를 설명하시오.
- (2) 甲이 기한 내 보완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의 처리 절차 및 법적 근거를 논하시오.
- (3)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 신청의 효력 발생 시점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설명하시오.
- (4)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보완·변경·취하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와 제한사항을 설명하시오. (20점)

1. 처분의 신청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봄

2. 신청의 접수

(1) 부당한 반려 등 금지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됨

(2) 접수증 교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① 구술·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②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③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음

3. 신청의 보완·변경·취하

(1) 행정청의 보완 요구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행정청은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음

행정청은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음

(2) 신청인의 보완·변경·취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음

4. 신청의 처리

행정청은 공표된 처리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다만,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7>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甲은 2025. 8. 12.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법상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되어 건축 일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처분 내용>

1. 건물 옥상 일부 구조물의 철거 명령
2. 위반 부분과 관련한 시정명령 및 이행 기한 부여

그러나 甲은 해당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甲은 이에 대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절차상 하자만으로 해당 처분이 위법·무효가 되는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 정도(중대성·명백성)와 관련하여, 위 사례에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될 가능성을 검토하시오.

1. 문제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가의 문제로, 특히 기속행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2. 학설과 판례

(1) 학설

- ① 소극설 : ㉠ 행정절차는 적정한 행정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 절차위반을 이유로 다시 처분하다 해도 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경제 및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점을 논거로, 행정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함
- ② 적극설 : ㉠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고, ㉡ 소극설에 따를 경우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적 규제를 담보할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 등에서 독자적 위법성을 긍정

(2) 판례

청문절차의 결여,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절차의 결여 등 절차위반을 위법사유로 인정

(3) 검토

적정한 절차는 적정한 결정의 전제가 된다는 점, 그리고 다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적극설과 판례가 타당

3.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판례는 대부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로 인정하나, 절차위반으로 인하여 그 절차가 지향하는 목적을 형해화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로 보기도 함

<8> 청문의 실시사유와 생략사유

약사 甲은 2024. 7. 25.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약국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통지받았다. 행정청은 甲이 약사면허 취득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법령상 약사면허가 없을 경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처분임을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곧바로 취소 처분을 내렸다. 甲은 사전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 없이 면허가 취소된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행정청이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것이 적법한지를 문제 삼고자 한다.

위 사례에서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의 생략이 허용되는지 행정절차법상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1. 청문실시 사유

-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다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
 - ① 인허가 등의 취소
 - ② 신분·자격의 박탈
 -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2. 청문의 생략 사유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3. 판례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9> 청문 절차

甲시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乙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예정하며 청문을 개최하였다. 청문 당일, 乙업체 대표가 심하게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고, 문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청문주재자가 주의를 주었으나 대표가 이를 따르지 않자, 청문주재자는 해당 대표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청문조서에 기록하였다.

청문 이후,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관할 보건소의 위생 점검 기록과 CCTV 영상 자료를 증거조사하여, 해당 자료를 첨부한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행정청에 제출하였다. 청문 후 乙업체는 “청문조서의 질서 교란 부분이 과장되었고, CCTV 자료 일부가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로 정정 요구를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설명하시오.
- (2) 다음 각 행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 ① 청문주재자가 乙업체 대표에게 퇴장을 명령한 조치
 - ② 청문주재자가 직권으로 보건소의 위생 점검 기록과 CCTV 영상 자료를 증거조사한 행위
- (3) 「행정절차법」상 청문조서의 작성과 정정 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청문실시 통지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

- (1) 처분의 제목
-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4)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 (5)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6)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청문의 실시

(1) 청문의 중요내용 설명

청문 주재자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

(2) 당사자들의 참여방법

당사자들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음. 당사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봄

(3) 청문주재자의 질서유지권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4) 청문의 계속(속행)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음

3. 증거조사

(1) 청문주재자의 직권 및 신청에 의한 조사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음

(2) 증거조사의 방법

- ① 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 ②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 ③ 검증 또는 감정·평가
- ④ 그 밖에 필요한 조사

(3) 관계행정청의 협조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4. 청문조서

(1) 청문조서의 기재 내용

- ① 제목
- ②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 ③ 당사자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 ④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⑤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 ⑥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 ⑦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 ⑧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청문조서의 정정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10>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과정에서 허용되는 문서의 열람·복사청구 제도

甲은 2025. 7. 10.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업시설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甲은 처분과 관련된 조사결과 문서와 해당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였다. 행정청은 일부 문서가 공개될 경우 기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열람 요청 일부를 거부하였다.

(1) 甲이 위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행정청이 열람 요청을 일부 거부한 경우, 그 적법 절차 및 거부 이유 소명의 요건을 설명하시오.

1. 열람 및 복사 청구권자

청문과 의견제출의 당사자등, 즉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2. 문서열람·복사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절차

(1) 행사기간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2) 행사방법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등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전자적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만, 청문일에 필요에 의하여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음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

(3) 행정청의 거부 가능성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함

(4) 열람·복사청구 대상 문서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3. 비밀의 유지

누구든지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1> 행정상 입법예고의 방법 및 절차

2025. 7. 10.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이용 요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서비스 요금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고자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 (1)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 (2) 입법예고 시 일반 국민이 개정령안과 관련 문서를 열람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의의

행정입법의 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2. 예고 내용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예고할 수도 있고, 입법안의 전문(全文)을 예고할 수도 있음

3. 공고

행정청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음

-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 공보를 통한 공고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함

4. 제출·통지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함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5. 열람·복사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6. 공청회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7. 예고기간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8. 의견제출 및 처리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함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9. 입법안의 재예고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①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②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함

<12> 행정예고의 방법 및 절차

최근 서울에서는 2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고, 일부 지역은 최고기온 40℃를 넘어서는 고강도 폭염이 지속되었다. 이에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폭염 시 공공 실외공간 그늘막 확대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하고자 한다. 행정예고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의의

다수 국민의 권익에 관계있는 정책, 제도, 계획을 국민에게 알려,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확보 및 국민의 행정예고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2. 행정예고 대상

(1) 원칙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함

(2) 행정예고 생략 사유

- ①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②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③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④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3. 입법예고 대체 시행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음

4. 예고방법

행정청은 정책등안(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함

5. 예고기간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

6.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행정청이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앞서 해당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해당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않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음

7. 예고내용의 열람·복사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8. 제출의견의 처리

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함

9. 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함

<13> 온라인 공청회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환경부장관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기존의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거나 예외적 사유에 따라 단독으로 온라인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와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원칙과 예외를 설명하시오.
- (2) 온라인공청회 개최 시 행정청이 따라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논하시오.
- (3)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의 반영 및 결과 통지와, 공청회 후 필요한 경우 재개최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의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의 공개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

2. 실시 방법

(1) 원칙

행정청은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음

(2) 예외

다만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음

3. 실시 절차

(1) 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내용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함

(2) 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위의 공고 사항을 게시해야 함

(3) 온라인공청회 참여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음

4. 온라인공청회 시스템(정보통신망) 구축·운영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5. 공청회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온라인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6. 공청회 결과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고, 온라인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해야 함

7. 공청회의 재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음

<14> 요약

甲은 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청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질의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甲의 요청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줄 것이라고 문서로 확답하였다. 그런데 2025. 8월, 행정청은 법령개정으로 건축허가 기준이 변경되어 해당 부지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관할 행정청이 甲의 질의에 확답한 행위의 법적 성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설명하시오.
- (2) 행정청이 위와 같은 확답을 할 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
- (3) 법령개정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甲에게 취해야 하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1. 확약의 의의

- 행정기관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령 또는 불발령을 약속하는 고권적 의사표시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1항 :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이하 ‘확약’)를 할 수 있다.”

2. 확약의 형식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함

3. 협의 등 절차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함

4. 확약의 불이행

(1) 구속력의 배제 사유

행정청은 ①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② 확약이 위법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함

(2) 확약 불이행의 통지

행정청은 확약이 위 배제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15> 위반사실의 공표

국세청장은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여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자’ 82명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자 한다. 공표 과정에서의 당사자 보호 절차를 설명하시오.

1. ‘위반사실 등 공표’의 의의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의 명단과 그 위반 또는 불이행한 사실을 공중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 ‘위반사실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음

2. 명예·신용 등의 훼손 방지

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인하여 당사자의 명예·신용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3. 당사자 보호 절차

(1) 사전통지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③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2) 의견제출

- ①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② 당사자는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음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함
-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제출 의견의 반영 등

- ① 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때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 ②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한 경우 당사자가 위반사실 등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함

4. 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정정

(1) 공표 방법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함

(2) 공표의 면제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정정과 재공표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6> 온라인 정책토론

A시장은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심 내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고자 한다. A시장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온라인 정책토론의 의의와 국민의견 수렴의 목적을 설명하시오.
- (2)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방법을 설명하시오.

1. 의의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공개적인 토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음

2. 행정청의 책무

행정청은 효율적인 온라인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음.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방법

(1) 반복토론의 실시

행정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는 경우 토론 참여자 간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토론 과제에 대하여 반복하여 토론을 실시할 수 있음

(2) 토론의 공개

행정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할 때에는 토론 개최계획, 토론 과제 및 토론 결과 등을 단계별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함

(3) 토론자료의 공유

온라인 정책토론에 참여하는 행정청과 그 밖의 참여자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함

(4) 토론 패널의 구성 등

행정청은 토론 패널을 구성할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론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전문성 및 주요 예상되는 입장 등을 고려하여야 함

행정청은 토론 패널을 구성한 경우에는 토론 참가 전에 토론 패널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17>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

지방공기업 A도시개발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협약에 대해 시민단체 甲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경영상 비밀일 수 있다는 이유로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구일로부터 20일이 지나도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정보공개법상 공개 여부 결정 기간에 비추어 A도시개발공사의 조치는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1. 결정 기간 및 기간의 연장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2. 제3자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다만,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3. 이송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4.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1) 공개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

여야 함

-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함.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음
- ③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

(2) 비공개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18>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보호

2025. 6. 10. A군수는 주식회사 I에너지(이하 'I회사'라 한다)와 대규모 육상풍력발전단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같은 해당 협약서의 내용이 주민 안전과 환경보호, 재산권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I회사와 A군수가 체결한 협약서(MOU) 공개를 A군수에게 청구하였다. I회사는 이 협약서가 자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I회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를 설명하시오.

1. 제3자에 대한 통지 및 공개거부요청

(1) 제3자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2) 제3자의 공개거부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3) 공개결정과 공개실시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2. 제3자의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1) 이의신청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대상임

(2) 행정심판·행정소송

- ①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② 제3자는 행정심판 청구 후 또는 항고소송 제기 후 집행정지를 구하여 잠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음
- ③ 한편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은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에서 제3자는 소송참가할 수 있음

3. 손해전보

위법한 정보공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19>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다음의 각 사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하시오.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관리 등을 위하여 진료내역 등을 수집·이용하는 경우
- (2)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을 위해 청약자의 자동차사고 이력, 다른 유사보험의 가입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3) 고객이 전화사기(보이스피싱)에 걸린 것으로 보여 은행이 임시로 자금이체를 중단시키고 고객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 (4) 도난방지, 시설안전 등을 위해서 회사 출입구(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1. 의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여기서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2.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에서의 준수사항

(1) 최소 수집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그리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2) 동의 거부권의 고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3) 재화 등 제공 거부 금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20> 개인정보처리자의 제3자 제공

A병원은 환자 진료 후,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정보를 제약회사 B사에 제공하였다. B사는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A병원에 항의하였다. A병원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위반되는가?

1. 의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음

2.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음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1>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2025. 7. 10. 甲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받았다. J회사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을 한 번에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고, 각 항목별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동의 문구가 전문 용어로 작성되어 있어 甲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甲은 이러한 동의 절차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동의 요건에 적합한지 의문을 가지고, 관련 기관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甲의 사례에 비추어 J회사의 동의절차가 적합한지 논하시오.

1. 포괄 동의의 금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2. 동의의 조건

-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3. 중요한 내용의 표시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함

4. 동의가 필요한 사항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구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

<22>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의 개념과 처리 제한

K회사는 앱을 통해 甲의 건강정보, 유전자검사 결과, 운동 기록, 성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K회사는 甲에게 이러한 정보들의 처리 목적과 범위,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으며, 건강정보와 유전자정보 수집에 대해 일반 개인정보 동의서에 포함된 포괄적 동의만 받았다.

K회사가 앱 회원 가입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고, 해당 민감정보 처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1. 민감정보의 예시

개인정보 보호법은 민감정보로 ① 사상·신념, ②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③ 정치적 견해, ④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들고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 ①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②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③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 ④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2. 민감정보의 처리 금지와 예외

(1) 처리 금지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됨

(2) 처리가 가능한 경우

- ① 정보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사항

(1)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 고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함

<23> 고유식별정보

甲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 주식회사 A에 계좌 개설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였다. A회사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甲의 운전면허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내부 고객관리 시스템에 저장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甲에게 고유식별정보 수집의 목적과 처리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동의 절차도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고유식별정보의 예시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②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③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④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2. 제외

공공기관이 다음의 경우에 처리하는 해당 정보는 제외

- (1)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2)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지와 예외

(1) 처리 금지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

(2) 처리가 가능한 경우

- ① 정보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4.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정기적 조사

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보호위원회는 ㉠ 공공기관 또는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② 조사의 대행

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 즉 ㉠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위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2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주식회사 A는 소속 직원 甲에게 바디캠을 착용하여 서울 ○○대형 쇼핑몰에서 시설 안전점검을 수행하며 방문객들의 동선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바디캠은 실시간 영상 전송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으며, 甲은 쇼핑몰 입구 한 곳에 작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바디캠에는 작은 불빛이 표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출입구나 쇼핑몰 내부에는 별도의 안내가 없었고,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乙은 방문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바디캠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 (2) A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하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였는지 설명하시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의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는 다음과 같음

- (1) 착용형 장치 :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2) 휴대형 장치 :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3) 부착·거치형 장치 :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한 경우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8)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3.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에서의 촬영 금지

(1) 원칙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

(2) 예외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는 허용

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의무 등

(1) 촬영사실의 표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함

(2)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함

<25> ‘가명정보’와 ‘가명정보 결합’의 개념

甲대학교 의학연구소는 심혈관질환 예방 연구를 위해 乙병원과 협력하여 환자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乙병원은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甲대학교 의학연구소에 제공하였다. 甲대학교 연구진은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자체 연구 데이터와 결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乙병원이 제공한 가명정보의 의미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제한 사항을 설명하시오.
- (2) 甲대학교가 가명정보를 심혈관질환 연구 목적으로 결합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과 절차를 논하시오.

1. 가명정보의 의미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2. 가명정보의 처리와 제3자 제공

(1) 가명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됨

(2)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의 금지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됨

3. 가명정보의 결합

(1) 의의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하나의 가명정보로 만드는 과정

(2)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함
-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6>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甲은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A사의 건강관리 플랫폼에 가입해 생체정보(심박수·혈압 등)를 제공받고 있다. 그런데 A사 한국지사가 甲의 생체정보를 사전 고지·동의 없이 미국 본사 서버로 이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사 한국지사 측은 “시스템 운영상 불가피해 계약 이행을 위해 동의 없이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A사 한국지사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설명하시오. (단,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법률, 조약 또는 국제협정은 없음)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금지 원칙과 예외

(1) 금지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처리위탁·보관(이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됨

(2) 예외적 허용

- ①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
-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 ⑤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상호주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국외 이전의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외로 이전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함

-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7>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및 손해배상제도

통신회사 A는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A회사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 정보를 관리하던 중,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입자 정보 파일 전체가 유출되었다. 이 파일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부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 (1) 개인정보 보호법상 A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시오.
- (2) A회사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1.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

(1) 통지방법

①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②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통지사항

- ①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 ②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 ③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2. 피해 최소화 등의 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무

(1)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신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72시간 이내에 일정한 사항(* 위에서 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

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음

(2) 신고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함

- ①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②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3. 징벌적 손해배상제

(1) 책임발생의 요건 및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함

(2) 손해배상액 결정의 고려 사항

- 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 ③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④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⑤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 ⑧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4. 법정손해배상제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2)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 (3) 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따라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 기 전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제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음

<28>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한 현황 등에 관한 열람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쓰시오.

1. 의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이에 대해 자신이 언제 동의했는지 등을 알 권리가 있음

2. 열람 대상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음 사항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보주체는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함.

-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

4. 열람의 제한 및 거절

(1) 열람 제한 및 거절 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절차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29>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甲은 A통신회사에 5년간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최근 B통신회사로 이동 통신 서비스를 변경하였다. 甲은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B통신회사로 전송해 달라고 A통신회사에 요청하였다.

■ 1차 전송 요구

가입 정보, 요금 납부 기록, 서비스 이용 내역,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 통화·문자·데이터 사용량 기록

■ 2차 전송 요구

A통신회사가 내부적으로 분석·가공한 정보(고객 맞춤형 요금 추천, 통화·데이터 패턴 분석 자료) A회사는 “일부는 분석·가공된 정보이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전송을 거부했다. 또한 甲이 같은 정보를 제3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도 전송해 달라고 했는데, A회사는 “반복적 요청으로 업무가 방해된다”고 거부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甲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대상이 아닌 정보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 (2) A통신회사가 제시한 세 가지 거부 사유(분석·가공 정보, 전송 시스템 미비, 반복적 요청)가 정보전송 요구권 거부의 정당한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 정보주체 자신에게로의 전송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 ②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 ③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2. 정보전송자 기준

(1) 보건의료정보전송자

- ① 질병관리청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③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④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2) 통신정보전송자

- ①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주체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 ②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1) 보건의료전송정보

- ①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 ② 「약사법」에 따른 조제기록 등 조제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 ③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수집된 정보
- ④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2) 통신전송정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이용정보, 이용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4. 전송 요구와 거절 등

(1)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송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함

(2)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사유

- ①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전송이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④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⑤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⑥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⑦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 ⑧ 정보주체 본인,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 ⑨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 ⑩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⑪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30>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A보험회사는 AI 기반 보험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인간 심사자 개입 없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신청자의 병력, 나이,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B는 병원에서 2주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며칠 후 “지급 거절”이라는 문자만 수신받았다. B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지급 거부 이유와 심사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보험사는 “AI 알고리즘 결과이므로 따로 설명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보주체인 B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시오.

1. 결정 거부권

(1) 내용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2) 적용제외

자동화된 결정이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에

2. 설명 요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3.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31>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

소비자단체 A는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B쇼핑몰이 이용자들의 구매이력과 위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 광고 대행사에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B쇼핑몰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B쇼핑몰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거부하였다. 이에 A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A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해당 단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1. 의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로 하여금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2.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 및 청구범위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따라서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소송임.

3.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요건

(1) 허가요건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 ②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2) 원고적격

- 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3) 전속관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함.

외국사업자의 경우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4) 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4. 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32> ‘신분자와 비신분자’ 및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甲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으나 장애인 등록증을 표시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때 乙은 甲과 함께 주차를 도와주었다. 장애인인 甲에게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된다. 乙은 장애인이 아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다음을 설명하시오.

- (1) 甲과 乙의 책임 성립 여부와 그 근거
- (2) 甲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 규정이 乙에게 미치는 영향

1. 책임의 공동 귀속 원칙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법 제12조 제1항).

이로써 특정인만 책임을 지는 ‘대표자 책임’ 또는 ‘소극적 행위자 책임 회피’를 방지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여러 명이 연루된 위반행위에 대해 집행 누수 없이 책임을 부과하고자 한 것이다.

2. 비신분자의 참여에 따른 책임 확대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제2항).

운전자·사업주 등 신분 중심으로 과태료 책임을 규정한 경우에도, 비신분자가 개입하면 그에게도 동일한 과태료 책임이 발생한다. 예컨대 차량이용자가 아닌 동승자가 개입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위반행위의 ‘실질적 원인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신분에 따른 책임 감면·가중의 적용 제한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제3항).

신분에 따라 감경·가중·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신분이 없는 참여자에게는 해당 효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함께했다라도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제한한 형평성 확보 방안이다.

<33> 과태료를 감경 제도

甲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의 상이등급자이다. 관할 행정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위반을 한 甲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甲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1.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여기서 ‘변경’에는 상당한 이유를 반영한 ‘감경’이 포함됨.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 의의

과태료 납부자의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를 두고 있음.

행정청은 당사자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2) 감경률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

(3) 개별 법령상 감경과의 중복적용 불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음

3.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 의의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당사자가 위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

(2) 감경률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3)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자진납부 감경과 의견제출과의 관계

자진납부 감경과 의견제출에 따른 감경은 중복적용 가능함.

그리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했으나 그 의견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라면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수 있음.

② 자진납부 감경과 사회적 약자 감경의 관계

자진납부 감경과 사회적 약자 감경은 중복 적용이 가능함. 따라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 감경사유’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거듭 과태료 감경을 할 수 있음.

<34> 행정청 단계에서의 과태료 부과 절차

甲은 공원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 질서위반행위를 하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관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사전통지

(1) 의의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

(2) 사전통지 사항

-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②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④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⑤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 ⑥ 감경(* 자진납부)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 ⑦ 과태료를 감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 ⑧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의견제출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3. 제출 의견의 반영

(1) 상당한 이유의 반영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이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해당 개별 법률의 규정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임.

(2) 추가 고려 사항

행정청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4. 과태료의 부과 및 제척기간

행정청은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과태료 부과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는 종료함.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5.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6. 법원에의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②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이의제기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없음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35>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甲은 과태료를 3회 체납하고 그 체납금액의 합계가 2천만 원인 사람이다. 甲은 5개월 전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가옥이 전소되고 다리를 다쳐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감치제도를 설명하고, 甲은 감치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시오.

1. 의의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

2. 요건

(1) 체납횟수, 금액, 기간의 제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일 것

감치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과태료 납부를 이행시키기 위한 간접강제수단이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주어도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감치의 대상에서 제외

3. 절차

(1) 행정청의 감치 신청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감치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음. 이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감치재판을 하게 됨

(2) 감치재판의 관할 법원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함

(3) 즉시항고

감치에 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4. 효과

감치기간은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정해지며,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함

<36>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의 선정기준과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열람

세종시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甲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정기 행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甲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고 최근 민원이나 처분 이력도 없었기에 선정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다. 이에 甲은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을 신청했지만, 담당자는 “무작위 선정이며 구체 방식은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하면 공무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만 답했다.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조사대상 선정 방식과 기준 열람거부의 적법성 여부를 논하시오.

1. 선정의 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함

2. 선정기준 열람

(1) 열람 신청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개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어도 위와 같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인정됨.

(2) 행정기관장의 조치

① 접수증 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열람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함

② 열람 결정

행정기관의 장이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열람 거부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음

- ㉠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④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열람거부결정서에 그 이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37> 출석·진술 요구에 의한 행정조사

서울시장은 관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인 A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이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장은 2025년 7월 15일을 출석일로 하는 출석요구서를 A에게 발송하였으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일시, 출석 장소, 출석 요구의 취지,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 등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A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지정된 출석일시가 자사 주요 계약업체와의 미팅 일정과 중복되어 업무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출석일시 변경을 요청하였다. 서울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출석일시를 2025년 7월 22일 오전 10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A의 대표는 변경된 일시에 출석하였으나 요청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진술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추가로 A에 출석을 요구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서울시장의 출석요구서가 「행정조사기본법」상 기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하시오.
- (2) A의 출석일시 변경 요청에 대한 서울시장의 조치가 「행정조사기본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시오.
- (3) 서울시장의 추가 출석요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1회 출석에 의한 조사 종결’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1. 출석요구서 발송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① 일시와 장소, ② 출석요구의 취지, ③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④ 제출자료, ⑤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⑥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함

2. 출석일시 변경 신청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음

3. 1회 출석에 의한 조사 종결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당해 조사를 종결하여야 함

<38> 공동조사의 실시 및 중복조사의 제한

B시에서 ○○요양원을 운영해오고 있는 A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자 B시 복지정책과는 2025. 3. 10.부터 3. 15.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조사 기간 중 동일한 민원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 3. 13.부터 3. 18.까지 별도의 현장조사를 계획하였다. 이에 대해 A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기관이 별도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한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의 조사를 저지하였다.

한편 두 기관의 조사는 모두 요양원 내 생활실을 방문하여 입소자와의 면담 및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 4. 5. A가 현장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요양원의 운영을 2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사례에서 「행정조사기본법」상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위법한 중복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운영정지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의의

종래 여러 기관의 행정조사가 중첩되는 분야의 경우에도 각 기관별로 별도의 행정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복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조사기본법은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중복조사를 규제함으로써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 등의 부담이 경감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2. 공동조사의 실시

(1) 공동조사의 사유

- ①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②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조사방법 등 협의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조사원의 구성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음

(3) 주무 행정기관 등에 의한 공동조사

둘 이상의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간에 서로 협의하여 조사를 주관할 행정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조사하는 방법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사를 주관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중복조사의 제한

(1) 행정기관의 재조사 금지 원칙과 예외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행정기관 간의 중복조사 제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39>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행정결정의 효과

「행정조사기본법」상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행정결정의 효과를 설명하시오.

1. 문제점

행정조사과정에서의 실체법적·절차법적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즉 행정조사가 적법요건을 결하여 위법한 경우에, 이 조사에 근거한 행정결정도 위법하게 되는지 문제됨

2. 학설

① 행정조사와 행정결정은 하나의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적정절차의 관점에서 행정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한 행정결정도 위법하게 된다는 견해(적극설), ② 법령에서 특히 행정조사를 행정행위의 전제조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와 행정행위는 별개의 것이므로 조사의 위법이 곧 행정행위를 위법하게 할 수 없다는 견해(소극설)

3. 판례

“과세처분이 법률조항을 위반한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하여 적극설의 입장

4. 검토

행정조사의 위법성은 행정조사가 행정결정과 하나의 절차를 구성하고 있는가 아닌가와 관계없이 이를 근거로 한 행정결정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적극설과 판례의 입장이 타당

<40>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등록과 공표

甲은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행정규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의 등록과 공표 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의의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존속기한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를 국민에게 알려야 함.

2. 규제의 등록

(1) 등록의무자 및 등록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2) 등록사유와 등록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3) 등록 시 명시사항

- ① 규제의 명칭
- ②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 ③ 규제의 처리기관
- ④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 ⑤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 ⑥ 규제의 존속기한
- ⑦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등록 등의 요구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규제의 공표

(1)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함

(2) 규제사무목록의 국회 제출

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41>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일몰제(Sunset Law)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의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고시 등)상 행정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하거나 개선을 검토하는 제도임.

즉,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기한을 설정하며, 정해진 기한 도래시 규제 존속여부를 심사하지 않거나 타당치 않은 규제로 평가되면 자동폐기하는 시스템임.

이는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됨.

2.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1) 기한의 설정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함
-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기한의 연장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6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3) 기한 설정 권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와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3. 규제의 재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키한이 도래하는 경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4.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함

<42>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甲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 상담 플랫폼을 개발하려 하였으나,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개시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이에 甲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신기술 서비스에 적용될 규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몇 개월간 회신하지 않아 甲의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었다. 甲은 기존 의료법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규제 정비 및 특례 부여를 요구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어 규제 완화는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甲은 규제 특례 위원회 회부를 다시 요청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甲의 규제 확인 요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 (2) 기존 의료규제를 해당 신기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행정기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3) 규제 특례 제도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흐름을 요약하시오.

1. 개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국민의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고,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며,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생명, 혁신성과 편익, 사후 책임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함

3. 규제의 정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함

-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특례 제도와 관련된 행정 절차의 흐름

(1) 사업자의 규제 확인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규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회신해야 함

(2) 규제 정비 의무 발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규제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신속히 정비해야 함

(3) 규제 특례 부여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규제 완화·면제가 가능

(4) 규제 특례 위원회 심의

규제 특례 신청은 규제 특례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

(5) 재심의 절차

위원회에서 부결 시 신청인은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6) 사후 관리 및 법령 정비

특례 내용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 부여 후 법령의 정비 여부 및 사유, 정비 계획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43>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의 신고의무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의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 설명시오.

1. 거주자

(1) 세대주 신고 원칙

주민은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때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세대주가 위임 가능한 자로는 ①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②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③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2. 재외국민

(1) 재외국민 본인 신고 원칙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재외국민 본인이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때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본인이 위임 가능한 자로는 ①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 ②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③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합숙하는 곳

(1) 숙소 관리자 신고 원칙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함

(2)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을 때

본인이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함

<44>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신고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관계

A는 최근 출생한 자녀의 출생사실을 가족관계등록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A는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출생신고만 하였다. 이 경우 법률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1. 가족관계등록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신고

(1) 적용범위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함

※ 갈음되는 주민등록사항 : ① 출생, ② 사망 또는 실종, ③ 등록기준지의 변경, ④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2)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함

(3)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에서 주민등록지에 통보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이 같은 법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함

2. 주민등록지 ↔ 등록기준지 양방향 통보 의무

(1)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알려야 함

(2) 등록기준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

통보를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45> 「주민등록법」상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甲은 서울특별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2025. 4. 1. 가족과 함께 경기도 △△시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甲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다. ○○구청장은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던 중 甲의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상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불복절차 포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의의

- “사실조사” : 주민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는 절차
- “직권조치” : 주민의 신고의무 불이행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최고, 공고)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등록·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하는 조치

2. 사실조사 사유

- (1) 신고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 신고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 (3)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최고 또는 공고

-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함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 (3) 최고 또는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4. 직권조치

(1)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 정정·말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최고·공고에서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함

(2) 거주불명 등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음.

(3) 직권조치 사실 통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

<46>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상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방법과 보안대책 관련 규정을 설명하시오.

1. 의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2.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음

※ [발급 유형]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함. 다만,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

급받은 사람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음

3. 보안대책

(1)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시행령 제38조 제3항).

(2) 발급기기의 제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제4항).

(3) 기타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한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4. 수수료, 조세, 공과금의 징수 금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4조의2 제3항).

<47>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제한되는 경우

甲은 남편 乙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여 현재 별거 중이다. 그런데 乙이 甲의 가족관계나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 甲과 가족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甲은 乙이 본인과 가족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상 甲이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의의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공익 위반 등을 초래할 경우 제한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가족 간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음.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또는 공익에 반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2.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제한신청

(1) 제한신청 사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가정폭력피해

자등')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2) 제한조치

- ①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 ②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3) 제한조치의 예외

- ①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한조치를하지 말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이혼한 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 방식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음

<4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증명서의 교부와 열람

丙은 乙의 친부(親父)이고, 甲은 乙의 처(妻)이다. 甲이 丙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청구사유

(1) 원칙적인 청구권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은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함

(2) 예외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②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③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 ㉡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 ㉢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2. 증명서 교부의 제한

(1)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방지

시·읍·면의 장은 증명서 교부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음

(2) 최소한의 요구 의무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3) 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 제한 신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4.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음.

5. 열람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음.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함

<49> 출생통보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사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출생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시오.

1. 출생통보제의 도입 배경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여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매우 많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필요에서 도입

2. 출생통보의 절차

(1) 출생정보 기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하 ‘출생정보’)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에 기재하여야 함

①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

②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③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출생정보 제출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출생사실 통보

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4)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

3. 시·읍·면의 장의 직권 출생 기록

시·읍·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생사실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함

- (1)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50> 등록부의 정정

甲은 최근 취업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기 위해 등본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乙과 혼인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실제로 甲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 미혼 상태였다. 이에 당황한 甲은 행정사 丙을 찾아가 상담하였다. 甲의 사정을 들은 丙이 검토해야 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신청

- (1)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 (2)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함
- (3)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함

2.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청

- (1)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 (2)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함
- (3)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함

3.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신청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함

4. 행정기관 등의 의무

(1) 시·읍·면의 장의 통지의무 및 정정

-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② 위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음.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통지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위 (1)에 따라 처리함

- 끝 -